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6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이 2018. 7. 30.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D에게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의 진행 경과

1) D은 2018. 4. 26. E, F, G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207호).

2) 위 제1심 법원은 2019. 2. 14.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2020. 2. 7. “D에게, E는 43,453,100원, F은 83,200,133원, G은 40,330,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19나21117호),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20. 6.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D은 2018. 7. 30. 피고 B과 사이에, 제1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얻게 되는 E, F, G에 대한 각 판결금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9. 8.경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양수받은 판결금 채권 중 50%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 채무자들의 변제공탁

1) 원고는 제1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제3채무자를 E, F, G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카단10771호로 피고 B의 E, F, G에 대한 제1소송의 판결금 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20. 6. 26.경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2) G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자 2020. 7. 23.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제1소송의 판결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20. 6. 23. 피고 B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1. 11. 25. “D과 피고 B이 체결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2401호).

3) 원고가 제2소송에서 제출한 별지 1, 2, 목록은 이 사건 소에서 제출한 별지 1, 2 목록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20. 6. 23. 피고 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하여 2021. 11. 2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기판력이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C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채권양도통지를 구하고 있다.

나.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참조).

그리고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6. 26. 피고 B의 E, F, G에 대한 제2소송의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20. 6. 2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2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제2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D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 피고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늦어도 원고가 제2소송을 제기한 2020. 6. 23.부터 진행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5. 26.에 제기된 피고 C에 대한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별지 1]

다음 표시의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2018. 7.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채권양도인 []과 제3채무자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207[광주고등법원 2019나21117, 대법원 2020다21642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판결판결에 따라 채권양수인 []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채권

다 음

채권양도인 [] []
여수시 [], []호 []

채권양수인 [] []
여수시 [], []호 []

제3채무자 1.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금 액 : 금 43,453,1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2.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금 액 : 금 83,200,1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제3채무자 3.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 []호 []
금 액 : 금 40,330,58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외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별지 2]

목 록

1. 공 탁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탁 번 호 : 2020년 급제1674호

공탁연월일 : 2020. 7. 9.

근 거 법 령 :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 전라남도 여수시 피공탁자 : 전라남도 여수시 , 호

공탁금액 : 48,875,808원

2. 공 탁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탁 번 호 : 2020년 급제1715호

공탁연월일 : 2020. 7. 21.

근 거 법 령 :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 전남 여수시 피 공 탁 자 : 전라남도 여수시 , 호

공탁금액 : 93,975,233원

3. 공 탁 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 탁 번 호 : 2020년 급제1777호

공탁연월일 : 2020. 7. 23.

근 거 법 령 :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 전남 여수시 , 호 피 공 탁 자 : ① 여수시 ② 전라남도 여수시 , 호 ③ 여수시 , 호

공 탁 금 액 : 45,505,654원

